



신구조문 대조표(인사규정시행세칙)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징계양정기준) ① 규정 제45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“별표9, 별표9-2, 별표9-3, 별표9-4, 별표9-5, 별표10, 별표10-2”와 같다. ②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.	제56조(징계의 구분 및 징계양정기준) ① 규정 제44조 장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“중장계”란 파면, 해임,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. 2. “경장계”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. ② 규정 제45조에 의한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“별표9, 별표9-2, 별표9-3, 별표9-4, 별표9-5, 별표9-6 , 별표10, 별표10-2”와 같다. ③ 징계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.
제58조(징계의 감경)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1. 상훈법에 의한 서훈 2. 정부 및 경기도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3. 사장표창(2급 이상 직원 제외)	제58조(징계의 감경)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그 직원이 장계처분이나 장계의결이 요구되어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계처분이나 장계의 감경을 받기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. 1. 상훈법에 의한 서훈 2. 정부 및 경기도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3. 사장표창(2급 이상 직원 및 부(소)단위 이상 표창 제외)
<신 설>	제60조의4(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안내) 사장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<신 설>	부 칙<22. 0. 0.>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